

의안번호	2219749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6.8.11.
추계번호	26B334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3 (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관리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, 주민 안전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조, 포획, 임시보호, 중성화, 회복, 반환,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운영, 민간위탁, 인력·장비·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36조의2 (떠돌이개·길고양이 지원 시설의 설치 등)	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조의3에 따른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구조, 포획, 중성화, 회복, 임시 보호, 입양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 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이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·위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·위탁하 는 시설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
		제1항의 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지정·위탁 절차, 운 영 요건 및 지원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조의3 (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관 리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6조의2 (떠돌이개·길고양이 지원시설 의 설치 등)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구조, 포획, 임시보호 및 중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, 이를 위하여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·위탁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수술의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「길고양이 중성화 지원」 사업을 시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49억 2,500만원임 (참고자료 참조)
 -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떠돌이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
 -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 수, 구조·포획·임시보호 및 중성화 사업의 규모,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·운영 규모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정·위탁의 범위 및 비용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 그러나 현재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 수와 시설 설치 수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고, 지원 대상·지원 기준·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개요

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)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도심지, 주택가 등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여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소
- (사업기간) '18 ~ 계속
- (예산규모) '26년 예산 4,925백만원*
 - * 산출근거: 123,125마리 x 20만원 x 국비 20% ('25년 대비 448백만원)
 - * 마리당 20만원(국비 20%, 지방비 80%), 기존 15만원에서 단가 인상('22~)

《 연도별 사업 실적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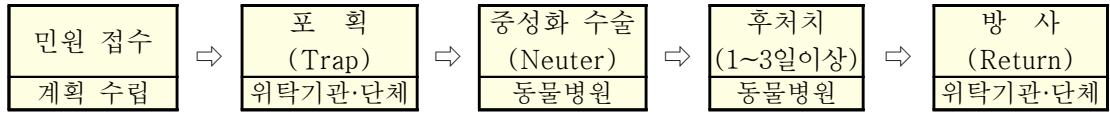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마리, 백만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사업량	52,178	64,989	73,632	83,539	104,434	121,537	114,464	614,773
집행액	684	1,069	1,062	1,108	3,154	3,605	4,551	15,233

□ 사업 방식

- '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(농식품부 고시)'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지역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- 기초 지자체 단위로 중성화 사업자(포획·수술) 선정 및 관리 감독
 - *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배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
- 지자체 자율로 추가 인력(기간제) 투입, 민간봉사 등을 활용*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
 - * 포획단계에서 자원봉사 활용, 자체 예산으로 사업량을 확대하는 경우 있음(TNR day)

《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요 》



- (민원인) 신고 → (시·군·구) 접수, 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 전달 → (위탁업체) 포획인 동원,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
- (포획인) 현장 출동 → 사진 촬영 및 포획 →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
- (동물병원) 중성화 수술, 후처치 및 회복 → (포획인) 포획장소에 방사